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등기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기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강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로 함(안 별표)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부산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부산		등기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광역시 전지역)
		부산진	"	부산진구, 동구
		금정	"	금정구
		중부산	"	중구, 서구, 영도구
	동부	등기과	"	해운대구, 기장군
		남부산	"	남구, 수영구
	서부	등기과	"	사하구, 강서구
		북부산	"	북구, 사상구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이상 생략>					
부산		등기과	부산광 역시	동래구, 연제구 (단, 상업등기, 선박 등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부산광 역시 전지역)	부산		<현행과 같음>			
		부산진	"	부산진구, 동구			<현행과 같음>			
		사하	"	사하구			<삭 제>			
		강서	"	강서구			<삭 제>			
		금정	"	금정구			<현행과 같음>			
		중부산	"	중구, 서구, 영도구			<현행과 같음>			
	동부	등기과	"	해운대구, 기장군	동부		<현행과 같음>			
		남부산	"	남구, 수영구		<현행과 같음>				
	<신 설>					서부	등기과	"	사하구, 강서구	
	서부	북부산	"	북구, 사상구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